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

제출년월일: 2018. 8. 24.

제 출 자: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대상을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인가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한 경우 계좌 자동이체와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 구세감면조례 제8조2 중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인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외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감면 혜택 부여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안 제8조2)
- 나.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8조2)

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등(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7.12. ~ 7.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로,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8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u>「협동조합기본법」 제85</u>	감면) <u>「협동조합 기본법」 제8</u>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5조 및 제105조의2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u>등록면허세의 납</u>	
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u>세액공제)</u> ① 법 제92조의2제1	세액공제) ①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	
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	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
서 한장당 150원	<u>식에 따른</u>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
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	
한 경우 : 고지서 한장당 500	
원	_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